

은 움직임을 볼 때 최근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권유에 감사드린다.

3) 장애인단체의 무관심과 여성장애인의 권리의식 부족

한편 장애인계에서조차 그동안의 활동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 그 첫번째의 원인을 찾아 볼수 있겠다. 그리고 정부 뿐 아니라 장애인계 또한 장애인의 복지정책이나 개선 방향을 막연한 장애인계층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가 삶의 질을 높히는 정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자조단체 스스로가 더 시급히 갖추어야 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여성장애인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의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 놓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비로소 여성 장애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III. 한국정부의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미래전략”에 보완, 이행되어야 하는 한국여성장애인 관련 발전적인 미래 전략

한국 정부는 여성, 장애 그리고 이로인한 빈곤의 삼중고를 살아가는 열악한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가 여성정책 미래 전략 목표로 세운 “2000년도까지의 전략 목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첨가시켜 여성장애인의 기본권을 비롯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각종 정책결정기구, 특히 여성과 장애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여성장애인이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정부내 각종 위원회 등 여성위원 참여 비율중 특별히 여성장애인을 적극 참여시킨다.

2. 여성장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연계체제

- 1) 여성정책 전담 기구를 내에 특별관심분야 전담기구를 두고 그곳의 분과 형태로 여성장애인분과를 두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적극 추진한다.
- 2) 정부 각부처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3) 여성장애인 자조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와 원활한 연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4) 국가발전 계획 여성장애인개발부문을 포함시키기 위해
 -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성별 구분된 통계를 실시해야 하며 이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 5) 정부의 중장기 여성발전계획을 수립시 특별관심분야를 두고 그 분야 중 여성장애인에 관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한다.
- 6) 여성장애인 자조단체 뿐 아니라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내에서의 여성장애인 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3. 여성장애인의 권리인식 개선

1)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의 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

-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선한다.

특히 유엔이 채택한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1982년 장애인을 위한 세계행동 계획 중 '모든연령의 여성장애인의 상황개선'조항, 1985년 나이로비에서 채택한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발전 중 '특별관심분야' 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제 296조항, 그리고 1995년 6월 방콕에서 ESCAP 총회에서 채택한 '아태지역 장애인10년을 위한 성명서의(여성장애인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채택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법과 장애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2) 여성장애인의 인식개선

-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을 만든다.
-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관한 왜곡된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4.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

1)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중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안을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2) 국내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의 취업교육 과정 중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질에 맞는 취업교육 내용을 적극 개발한다. 특히 고부가가치의 첨단 정보분야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우선시 한다.

3) 여성전문교육기관에서도 여성장애인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교육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취업교육기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기회를 우선으로 부여한다.

4) 공무원 임용시험(특히 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으로 구성된 자립 조직을 지원한다.

5.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1) 장애여아의 조기교육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여아의 통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6. 폭력으로부터의 여성장애인의 보호

1) "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조항'을 철폐하고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장애인에서 전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한다.

2) 특별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기관 내에 둔다.

7. 여성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 개선 사항

1) 모자가정의 복지증진

- 장애아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

- 정신지체여성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가정생활 공간(공동체생활)에 특별지원

- 여성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반적 여건 마련

즉, 보육시설 확충시 여성장애인이 원활하게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여건 마련

(편의시설, 수화통역, 보육시설에서 여성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오고가기 등)

2)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실시.

-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 고용보험 도입
- 여성장애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실시

8. 여성장애인의 주거 및 사회환경 개선

1) 사회의 문화환경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접근권 확보

-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이동권 확보
- 청각, 언어, 시각장애여성의 원활한 정보접근권 확보
: 정부 관련 기관의 청각, 시각, 언어장애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하는
통신과 커뮤니케이션 기기 개발 지원

2) 여성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 장애관련 법규에 여성장애인의 주거 편의시설 개선시 경제적 지원 조항 삽입

3)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에 적합한 보장구, 의료기구 및 생활용품 개발 및 개발지원

IV. 향후 전망

정부의 경제 우선주의 정책,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낙후된 인식, 여성단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부족 그리고 장애관련 단체와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권리의식부족 등이 맞물려 여성장애인의 심각한 사회 소외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의 한국NGO여성위원회의 주제분과로서 제4회 세계여성대회의 참여가 한국의 여성장애인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의식의 계기가 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